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4953 |
|----------|------|

제출년월일 : 2017. 10.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취약계층 지원,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감면율을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감면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조)
- 나.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현행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조)
- 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조)
- 라.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안 제8조)
- 마. 우수 향토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
- 바. 고용창출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
- 사. 시장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1조)
- 아.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에 입주하는 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취득세의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2조)
- 자.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3조)
- 차.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4조)
- 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부 관계법령 붙임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라. 합 의 : 해당 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7. 9. 20 ~ 10. 10.(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현행   | 개정안  |
|--|--|
| <p>② 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유통단지 중 도매단지(비철급속관을 제외)내의 미분양된 토지 또는 계약해지된 토지 내에서 건축·분양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2. (생략)</p> <p>③ 유통단지안에서 제4항에 따른 입주시설과 업종의 유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17조에 따라 임대 승인을 받은 자가 관계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다음 표에서 정하는 임대면적비율의 범위 안에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그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p> <p>④ (생략)</p> <p>제13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2. (생략)</p> <p>제14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기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2. (생략)</p> | <p>② -----<br/>-----<br/>-----<br/>-----<br/>-----<br/>-----<br/>-----2020년 12월 31일-----<br/>-----<br/>-----<br/>-----<br/>-----<br/>-----</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br/>-----<br/>-----<br/>-----<br/>-----<br/>-----<br/>-----2020년 12월 31일-----<br/>-----<br/>-----<br/>-----<br/>-----</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br/>-----<br/>-----<br/>-----<br/>-----<br/>-----<br/>-----2020년 12월 31일-----<br/>-----<br/>-----<br/>-----</p> <p>1. 2. (현행과 같음)</p> <p>제14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감면) -----<br/>-----<br/>-----<br/>-----<br/>-----<br/>-----<br/>-----2020년 12월 31일-----<br/>-----<br/>-----<br/>-----</p> <p>1. 2. (현행과 같음)</p> |



-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② 장애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6.12.27.>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29.>

-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31., 2016.12.27.>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6.12.27.>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사"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사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8.4.>

-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14., 2016.12.20.>

- ③ 삭제 <2016.12.20.>
-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14., 2015.9.1.>
-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 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4.>  
[제목개정 2011.8.4.]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 ③ 삭제 <2006.3.3.>
-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8.3.>
-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8.3.>
-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 ⑦ "전략적 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8.3.>
-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2016.3.22., 2016.3.29., 2016.5.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1.30.>
  -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 ③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8.3.]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립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③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과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휴업·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09.12.30.]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5. 휴업,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1.26.]

제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1. 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 5.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1.26.]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6.1.6.>

- 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 2. "의약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
- 4. "보건의료기술"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을 말한다.

5.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의료연구개발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나.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1) 의료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3) 연구기관
    - (4) 정부출연기관 등
7.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8.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①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입주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의료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삭제 〈2015.12.29.〉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입주 승인 취소와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 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수산물가공업, 전통놀이 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 1. 삭제 <2015.12.31.>
- 2. 삭제 <2015.12.31.>
- 3. 삭제 <2015.12.31.>
- 4. 삭제 <2015.12.31.>

② 법 제17조제1항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개정 2011.3.29., 2011.12.31., 2015.12.31., 2016.12.30.>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6.12.30.>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2016.12.30.>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시행일 : 2018.1.1.] 제8조제4항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1. 시의 노사화합상,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거나 시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2.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및 스타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 12. 30 조례 제4000호).(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 지원한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시 우선 예우
  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4.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주관 문화·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6.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상일,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스타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이하 "요일제"라 한다)의 제도운영, 참여방법, 인센티브, 페널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용차요일제"라 함은 시민 스스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 "운휴일"라 함은 월요일~금요일 중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신청한 해당 요일을 말한다.
3. "전자태그"라 함은 승용차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차량 조수석 우측 상단부에 부착하는 고유번호와 운휴일이 내장된 태그를 말한다.
4. "RFID 리더기"이라 함은 전자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안테나를 포함한 현장장비를 말한다.
5. "제외차량"이라 함은 자동차 유형별로는 경차(1000cc미만),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이 해당되며, 사용 용도별로는 장애인 사용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유아/임산부 동승 차량, 행정차량, 자체 주차장 운영 규정에서 특별히 지정한 차량 등이 해당된다.

제3조(운휴일 지정) ① 운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중 1일만 선택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의 정책에 따라 운휴일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각종 홍보 수단을 이용하여 별도 공지를 한다.

제4조(운용시간) ① 요일제 운용시간은 운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요일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요일제 대상차량은 대구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한다(리스 및 렌터카를 포함).

② 제외차량 소유자가 요일제 참여신청을 요구할 경우에는 참여는 가능하나 자동차세 감면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제6조(참여신청) ① 인터넷 신청은 참여차량 소유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② 방문신청은 참여차량 소유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을 준용한다.

④ 렌트차량은 법인 대표자 및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리스차량은 이용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신청방법) 요일제 신청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1.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carfree.daegu.go.kr>)
2. 방문(구청 및 군청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제8조(전자태그 부착) 전자태그 부착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부착한다.

제9조(자동차세 감면) ① 요일제 참여혜택은 전자태그를 부착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2항, 달성군시세감면조례 제16조 2항에 따른다.

제10조(자동차세 추징)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추징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15조 2항, 달성군세감면조례 제16조 2항에 따른다.

제11조(미준수) ① 요일제 참여차량이 운휴일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운휴일 위반이 연간 5회 이상일 경우 탈퇴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탈퇴 처리된 차량은 당해연도에 재가입 할 수 없다.

제12조(훼손 및 미부착) ① 참여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탈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탈퇴 처리된 차량은 당해연도에 재가입 할 수 없다.

제13조(장기 미운행) 참여차량 운행기록이 30일동안 없는 경우 태그 점검을 요구하며 30일이내 미점검 시에는 탈퇴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운휴일 변경) 참여차량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운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간 2회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제15조(탈퇴) ① 요일제 참여차량이 자진 탈퇴한 후 당해연도 재가입을 요구할 경우 연간 2회까지 가능하다.

② 요일제 미준수, 고의훼손 등으로 탈퇴된 차량은 당해연도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다.

③ 요일제 탈퇴신청은 요일제 홈페이지 및 구청,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전자태그 불량) 전자태그 자체 불량은 태그 점검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불량여부에 따라 교체처리 한다.

제17조(참여차량 변경) 참여차량의 매도, 말소, 관외 주소지 이전시 자동차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변경정보에 따라 자동 탈퇴 처리하며 참여자에게 그 사실을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 연계) ① 요일제를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와 제도운영 및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운영한다. 단, 자동차세 감면은 제외한다.

② 운휴일 타시도에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도 연간 위반횟수에 포함한다.

제19조(요일제 혜택)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은 대구시에서 개발, 모집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 후 시행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35호 (2017.3.20.)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15조(지원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사업장 대비 투자사업장의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별표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별표 6]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15조제1항 관련)

| 신규 고용인원수      | 추가 지원비율 |
|---------------|---------|
| 10명 이상 20명 미만 | 1%p     |
| 20명 이상 30명 미만 | 2%p     |
| 30명 이상 40명 미만 | 3%p     |
| 40명 이상 50명 미만 | 4%p     |
| 50명 이상        | 5%p     |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 신설 투자 : 신설되는 투자사업장의 고용인원
- \* 증설 투자 : 증설 투자되는 사업장의 신규 고용인원
- \* 국내복귀기업 : 투자사업장의 고용인원
-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의 고용인원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의 시행으로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함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중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취약계층 지원,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이므로 미첨부 사유 1호에 해당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박희문